

#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67,964,000	29,038,920
일반회계	942,230,000	28,266,900
특별회계	25,734,000	772,020
기타특별회계	25,734,000	772,020
의료보호기금사업	2,214,000	66,42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391,000	71,73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548,000	256,44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자기금	1,008,000	30,240
주택사업	154,000	4,6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7,000	3,210
주차장설치사업	1,241,000	37,23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348,000	10,440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1,015,000	30,450
학교급식지원센터	8,708,000	261,24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4,376,785천원 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